

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유의사항 안내 (1인 1대 1년 후!)

정부는 전파 혼선 방지 및 전자파로부터 기기·인체 보호를 위해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유·무선기기, 전자제품 등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KC 인증)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받지 않은 제품의 제조나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전자기기(태블릿PC, 휴대전화, 블루투스 이어폰 등)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판매함으로써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 사유로,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중고거래를 통해 위법하게 재판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해외직구 제품은 1인당 1대(모델별) 적합성평가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 면제받은 제품을 **반입일(통관일) 1년** 이내 판매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